파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시 보

제2553호

2026년 10월 8일 (목)

차 례

조례 · 규칙

○ 파주시 조례 제2423호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 1
○ 파주시 조례 제2424호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파주시 조례 제2425호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파주시 조례 제2426호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조례 ·· 15
○ 파주시 조례 제2427호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 ····· 19
○ 파주시 조례 제2428호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 파주시 조례 제2429호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30
○ 파주시 조례 제2430호 파주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36
○ 파주시 조례 제2431호 파주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9
○ 파주시 조례 제2432호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 ····· 44
○ 파주시 조례 제2433호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0
○ 파주시 조례 제2434호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5
○ 파주시 조례 제2435호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8
○ 파주시 조례 제2436호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3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6-2641호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4
○ 파주시 공고 제2026-2645호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5
○ 파주시 공고 제2026-2625호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5
○ 파주시 공고 제2026-265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7

고시공고

○ 파주시 고시 제2026-40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81
○ 파주시 고시 제2026-403호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 82

회람									

발 행 : 파 주 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1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

2026년　10월　8일

파주시 조례　제2423호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 및 범위)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취약지역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②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범위는 파주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2. 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

3.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반려견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비

5. 제7조에 따른 반려견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파주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활동이 우수한 반려견 순찰대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협력과 ☏ 940-4964
입안자	이혜정 의원

□ 제정이유

○ 반려견 산책활동과 지역 방범 순찰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주민 참여형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제1조 ~ 제2조)

○ 반려견 순찰대 활동 및 범위 (제4조)

○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연계사업 및 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 (제5조 ~ 제6조)

○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7조)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1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

2026년　10월　8일

파주시 조례　제2424호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적법」 제4조에”를 “「국적법」 제4조에”로 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제4조 중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를 “지

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결혼이민자”를 “결혼이민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생활정보”를 “생활정보, 일자리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 사업

제9조 중 “범위에서 「파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 940-4491
입안자	이익선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1.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

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 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생 략)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직업교육·훈련 제공 4.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② (생 략)	제5조(지원사업) ① ----------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 등---------- 2. (현행과 같음) 3. ---------- 생활정보, 일자리정보------- 4. ~ 7. (현행과 같음) 8.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 사업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제9조(수당 등) ----------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개정이유

○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의 정의 규정 정비 (제2조)

○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 신설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 (제5조)

○ 자구 및 인용 조례 정비 (제4조 및 제9조)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1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

2026년　10월　8일

파주시 조례　제2425호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을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보육아동과 ☏ 940-8113
입안자	이정은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시민의 의무) 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5조 (생 략)	제5조·제6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17조 (생 략)	제8조 ~ 제18조 (현행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 개정이유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과 보호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파주시민의 신고 관련 사항 및 보호자의 학대행위 금지 의무 규정(제4조)

○ 제7조의 조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을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으로 변경하여 교육 범위 확대(제7조)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1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

2026년　10월　8일

파주시 조례　제2426호

파주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차량의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차량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각지대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형 또는 대형자동차로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소유한 차량 및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2.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장치”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대형

차량의 우회전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 방법으로 위험을 경고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파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등록된 대형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차량의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장치(이하 “보행자 감지장치”라고 한다) 설치 및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대형차량에 대하여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형차량에 보행자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보행자 감지장치의 성능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등) 시장은 보행자 감지장치의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관내 대형차량 소유자·관리자,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행자 감지장치의 사용법, 시야 사각지대의 위험성,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형차량 사각지대의 위험성과 보행자 안전수칙에 관한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형차량의 우회전 사각지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감지장치의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각급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버스정책과 ☏ 940-5763
입안자	김환중 의원

□ 제정이유

○ 대형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량의 우회전 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대형차량에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의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회전 사각지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제1조, 제2조)

○ 적용대상과 시장의 책무 규정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의 근거 마련 (제3조, 제4조)

○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제6조 ~ 제8조)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1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

2026년　10월　8일

파주시 조례　제2427호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픽시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픽시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전거 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사람의 힘으로 운전되는 자전거 중 앞바퀴와 뒷바퀴의 제동장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를 말한다.
2. “미성년자”란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미성년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에 미성년자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픽시 자전거 이용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픽시 자전거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지도·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픽시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주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사고 예방 사업) ① 시장은 픽시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전거 구조 및 위험성 교육·홍보

2. 제동장치 부착 등 올바른 픽시 자전거 이용을 위한 관련 법규 교육 및 안전한 운행 방법

3. 각급 학교와 연계한 학생 대상 픽시 자전거의 안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이용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요건과 통행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 및 경기도,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 법인·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건설과 ☏ 940-4666
입안자	지은영 의원

□ 제정이유

○ 최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안전교육 및 홍보, 운전자의 준수사항,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제1조, 제2조)

○ 시장·이용자·보호자의 책무 규정 (제3조)

○ 실태조사 및 안전사고 예방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제4조, 제5조)

○ 픽시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 규정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 근거 규정 (제7조, 제8조)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1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

2026년　10월　8일

파주시 조례　제2428호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1항 중 “노외·부설 공영주차장”을 “공영 노외주차장과 파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과 파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 및 일반인의 이용이 많은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는 경우 총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일반인의 이용이 많은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

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중 일반인이 상시 이용하는 민간시설을 말한다.

제1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은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민간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별표 5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란 다음에 가족배려 주차구획 설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차관리과 ☏ 940-5944
입안자	옥승철 의원

[별표 5]

보 조 금 지 급 기 준(제13조제3항 및 제8항 관련)

구 분		보조금 지원액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차장 설치	1. 담장 또는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 1면당 최대 1,800,000원까지 보조
	2. 이웃간 대문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 1면당 최고 2,000,000원까지 보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1.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주차 시설개선비	○ 최초개방 - 기본 5면 최대 6,000,000원 보조 - 초과 1면당 300,000원 보조 - 최대 24,000,000원 한도 보조 ○ 재개방 - 최대 5,000,000원 보조
	2. 개방주차장 유지관리 비용 지원	○ 최초개방 / 재개방 - 1면당 월 20,000원 지원 - 연 최대 12,000,000원 지원 ※ 시설개선비와 중복 지원 불가
	3. 개방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 지원	○ 5면 이상 개방 건축물 대상 - 연 최고 500,000원 한도 지원(최대 2년간) ※ 미가입 건축물 지원 불가
가족배려 주차구획 설치	민간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지원	○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
< 그 밖의 사항 >		

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면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1면마다 최고 500,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나. 내 집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개조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비고

1. 총 공사비가 상기 지급액 이하일 경우에는 실공사비(사업비 정산금액)만 지급하며, 최대 보조금액이 초과된 경우 해당 금액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 할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5(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50대 이상인 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제12조의5(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공영 노외주차장과 파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부설주차장----------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과 파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 및 일반인의 이용이 많은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는 경우 총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서 “일반인의 이용이 많은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또

	는 교육연구시설 중 일반인이 상시 이용하는 민간시설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3조(보조) ① ~ ⑦ (생 략)	제13조(보조)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시장은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민간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개정이유

○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장의 민간 설치를 권고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및 파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부설주차장에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제12조의5제1항)

○ 민간 노외주차장 및 일반인의 이용이 많은 시설의 부설주차장에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를 권고함 (제12조의5제2항 및 제3항)

○ 민간 노외주차장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비용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제8항)

○ 민간 노외주차장 등의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기준을 설치 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예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별표 5)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1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

2026년　10월　8일

파주시 조례　제2429호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과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장애 관광 관련 시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광약자와 무장애 관광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장애 관광 사업)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의 관광 수요와 관광지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관광지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 개선
3. 무장애 관광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및 정보 접근성 개선
4. 무장애 관광 상품, 관광코스 및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관광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이동수단 연계 및 현장 안내·지원
6. 휠체어 등 관광 활동에 필요한 이동보조기기의 비치·대여 및 관리
7. 관광사업자와 관광 관련 시설의 운영자·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무장애 관광에 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9.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무장애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파주시 무장애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무장애 관광 관련 주요 시책과 사업의 추진 방향

2. 관광지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 개선

3. 무장애 관광 사업의 추진 실적 점검 및 개선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른 파주시관광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 중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광사업자 등

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활성화 및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장애 관광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소관부서	관광과 ☏ 940-4631
입안자	손형배 의원

□ 제정이유

○ 모든 사람이 제약 없이 관광 본래의 가치와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 (제3조)

○ 무장애 관광 사업 및 위원회 (제4조 ~ 제5조)

○ 사업의 위탁·대행 및 협력체계 구축 (제6조 ~ 제7조)

○ 재정지원 및 포상 (제8조 ~ 제9조)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1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

2026년　10월　8일

파주시 조례　제2430호

파주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란 도심 속 공원 등 녹지공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한 장비와 규칙으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형태의 골프를 말한다.
2. “파크골프장”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파크골프 시설로서 경기장, 관리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파주시민의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사업)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파크골프장 설치 및 확충
2.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파크골프 안전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파크골프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파크골프 대회 및 행사 개최
2. 파크골프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협력
3.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 사업
4. 국내외 교류 및 스포츠 관광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체육과 ☏ 940-4831
입안자	이진아 의원

□ 제정이유

○ 생활체육으로 확산되고 있는 파크골프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확산,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제3조)

○ 활성화 사업 (제4조)

○ 지원사업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제6조)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1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

2026년　10월　8일

파주시 조례　제2431호

파주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파주시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어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나.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어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수산 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어업인 영농·영어 기반 및 농어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어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농어업인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영어 정착 창업 지원금 지원사업
2. 영농·영어 기술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3. 영농·영어 기반시설 및 자재 지원사업
4. 영농·영어 기술 향상을 위한 현장 실습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축수산 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어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 940-4564
입안자	이진아 의원

□ 제정이유

○ 파주시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여 고령화되는 농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함. 이를 위해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농어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제1조 ~ 제2조)

○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계획 및 지원사업 (제4조 ~ 제5조)

○ 청년농어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제한 내용 (제6조 ~ 제7조)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1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

2026년　10월　8일

파주시 조례　제2432호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고 활동하는 파주시 4에이치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에이치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회원의 자긍심을 높여 파주시의 농업·농촌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장학금은 선발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4에이치 활동을 한 회원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추천)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장학생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추천 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 인원을 복수로 선정하여 지정 기일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학교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 1부

3. 4에이치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선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복수로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순서에 따라 평가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1. 시·군·구 단위 이상 4에이치 관련 대회에서 입상하였고, 4에이치 프로그램 수행경험 등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2.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으나 4에이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사람

3. 시·군·구 단위 이상 4에이치 관련 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학업 성적이 우수한 사람

② 시장은 장학생 선발 결과를 학교장을 통하여 장학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금 선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장학금을 지급 받은 후에도 학업과 4에이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정지)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4에이치 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퇴학, 정학, 제적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 940-5281
입안자	이익선 의원

[별지 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1)성 명	한글		(남・여)
	한자		
2)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3)주 소			
2. 장학생 인적사항			
1)성 명	한글		(남・여)
	한자		
2)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3)학교명	학교 학년 학과		
4)보호자와의 관계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① 학교장 추천서
② 학교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
③ 4에이치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파주시 4-H 장학금」대상자 선발 및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장학금 대상자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4-H회원 및 법정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장학금신청서 작성내용
   -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 1년

4.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 및 장학금 지급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4-H회원 성명 : (인)

법정대리인 성명 : (인)

미성년자와의 관계 : 부/모/기타( )

□ 제정이유

○ 파주시 4에이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회원의 자긍심과 학업 의욕을 고취하고, 미래 농업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 장학금 지원대상 및 장학생 추천 절차 (제3조, 제4조)

○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 (제5조, 제6조)

○ 장학생의 의무 및 장학금 지급 정지 (제7조, 제8조)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0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

2026년　10월　8일

파주시 조례　제2433호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수작업형”을 “특수용도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하여”를 “이용하여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로 관리주체의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제3호 중 “제3조제1항제3호”를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위생과 ☏ 940-8538
입안자	위 생 과 장	장 혜 현
	위생관리1팀장	한 은 숙
	담 당 자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3. (생 략)	제2조(정의) ----------. 1. ---------- 특수용도형 ----------. 2.·3. (현행과 같음)
제3조(영업장소)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신 설>	제3조(영업장소) ①---------- 이용하여 일반음식점영업, ----------. 1.·2. (현행과 같음) 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로 관리주체의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첨부서류)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첨부서류)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 ---------- ---

□ 개정이유

○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허용 장소를 명확히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에 따른 정책 변화에 맞춰 조례 내용을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 및 영업 범위 현행화 정비(제3조)

○ 제3조 개정에 따라 제4조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정비(제4조)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0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

2026년　10월　8일

파주시 조례　제2434호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치협력과 ☎940-2971
입안자	자치협력과장	정　구　생
	평화협력팀장	김　지　영
	담　당　자	윤　소　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 운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제23조)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0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

2026년　10월　8일

파주시 조례　제2435호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실행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합지원 사업”을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7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 940-3703
입안자	복지정책과장	최 선 희
	통합돌봄팀장	백 효 진
	담 당 자	김 은 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② (생 략)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사업부서 및 민간 제공기관,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지역계획----------. ---------- ---------- ----------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 제6조제2항---------- ---------- ---------- ---------- ---------- --.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② ---- 제5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위임 근거 조문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문 오기 사항 자구 수정(제4조제3항)

○ 상위법령 위임 근거 명시(제11조)

- “통합지원 사업”을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으로 개정

○ 조문 간 인용 오기 사항 개정(제14조제1항 및 제2항)

- 조문 간 인용 오기 사항 개정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및 2026년 제10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손 배 찬 ㊞

2026년　10월　8일

파주시 조례　제2436호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파주시”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제6호 중 “시의회”를 “파주시의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적격자 등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라 대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적격자”를 “따른 대행업체의 공정한 선정과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적격자 등”으로, “있으며,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본다.

1. 제1분과위원회: 제8조제2항에 대한 심사

2. 제2분과위원회: 제12조제4항에 대한 심사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단지, 상업용지 등의 분양자 또는 소유자가 설치한 자동집하시설의 설비는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민이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장이 주민의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설치 후 10년(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 경과한 자동집하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리·보수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상적인 설비의 유지·보수비용 등은 제외한다.

1. 지하 이송관로의 파손·함몰·이탈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2. 굴착, 관로 개방 등 토목공사를 수반하여야 복구가 가능한 경우

3. 통신선로 또는 제어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안전사고의 우려 또는 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핵심 설비의 고장으로 인해 자동집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이 중단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하여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재정 적정성 판단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⑤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파주시의”를 “시의”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수 수”를 “수”로 한다.

제30조를 제31조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적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원순환과 ☎ 940-4771
입 안 자	자원순환과장	전 종 고
	환경시설팀장	경 형 구
	담 당 자	신 인 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재활용품”이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 13. (생 략)	제2조(정의) ----------. 1. ~ 6. (현행과 같음) 7.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8. ~ 13. (현행과 같음)
제3조(폐기물관리 관할 구역) ① 폐기물관리 관할구역은 파주시 전 지역으로 한다. ② (생 략)	제3조(폐기물관리 관할 구역) ① ----------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5. (현행과 같음) 6. ---------- 파주시의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적격자 등 심사위원회) ①----------따른 대행업체의 공정한 선정과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적격자 등 --------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본다. 1. 제1분과위원회: 제8조제2항에 대한 심사 2. 제2분과위원회: 제12조제4항에 대한 심사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2조(자동집하시설의 관리) ① (생 략)	제12조(자동집하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주택단지 및 상업용지를 포함한 공공시설용지 내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의 설비는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	②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단지, 상업용지 등의 분양자 또는 소유자가 설치한 자동집하시설의 설비는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만, 시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관리·운영할 수 있다.	또는 입주민이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장이 주민의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설치 후 10년(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 경과한 자동집하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리·보수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상적인 설비의 유지·보수비용 등은 제외한다. 1. 지하 이송관로의 파손·함몰·이탈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2. 굴착, 관로 개방 등 토목공사를 수반하여야 복구가 가능한 경우 3. 통신선로 또는 제어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안전사고의 우려 또는 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핵심 설비의 고장으로 인해 자동집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이 중단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하여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재정 적정성 판단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신 설>	⑤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생 략) 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 전면에 파주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제19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의 ----------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26조(무단투기 등의 신고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반행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되돌려 보낼 수 수 있다. <신 설> 제30조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무단투기 등의 신고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수 -------. 제30조(적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1조 (현행 제30조와 같음)

□ 개정이유

○ 공동주택 등 민간에서 관리·운영 중인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시설 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신속하게 수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동집하시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사를 위해 분과위원회 규정 신설(제9조제4항)

○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수리·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제12조제4항)

파주시 공고 제2026-2641호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2. 개정이유

가. 관광지 및 관광시설 이용객 등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화폐 지급 근거 신설(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본문과의 호응을 고려하여 문구 정비(안 제7조 전반)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관광과 관광정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파주시청 관광과(우 10930)

○ 전화 : 031)940-4361 / Fax 031)940-4369 / 이메일 geoinfor@korea.kr

파주시공고 제2026-2645호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매년 증가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행 훈령에 맞게 인용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2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함(안 별표)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민원여권과 종합민원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민원여권과(우 10932)

○ 전화 : 031)940-4181 / Fax 031)940-4189 / 이메일 comos324@korea.kr

파주시 공고 제2026-2625호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2. 개정이유

○ 읍·면·동 위임 사무의 조율 및 소관부서 근거법령 현행화를 통해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서별 단위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함(안 별표)

- 위임사무 신설 : 1건
  · 건축관련 신고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무 신설
- 위임사무 삭제 : 4건
  · 의료급여증 반납, 소하천, 이륜차 과태료 부과 등 사무 삭제
- 단위사무 및 근거법령 변경 : 1건
  · 지방공무원 복무 감독을 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및 근거 법령 현행화
- 근거법령 변경 : 4건
  · 「농지법」, 「공유수면법」, 「옥외물광고법」 법령 현행화
- 용어 현행화 : 1건
  · 「농지법」 농지대장 명칭 현행화(농지원부 → 농지대장)
- 수임기관 변경 : 1건
  · 「농지법」의 농지대장 관련 직접적 위임 주체인 읍·면 제외

4. **개정조례안** : 별 첨

○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조직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8606 / Fax 031)940-4109

파주시 공고 제2026-265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민선9기 3대 시정목표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구성

○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및 조직의 재배치

○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및 중앙정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 관리

3. 주요내용

○ 시장직속 시민소통관으로 신설하고, 시민소통업무 및 시장정책 보좌기능을 강화함(안 제3조)

○ 예산정책실(변경) : 부서 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 (안 제5조)

- 예산법무과, 회계과, 공공건축과(이관), AI도시정책과(변경·이관), 정보통신과(변경·이관)
- AI정책관과 첨단도시정보과의 업무를 재조정하여, AI도시정책과와 정보통신과로 변경함

- 공공건축과를 예산정책실 산하로 배치하여 SOC분야 재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관리업무를 일원화함

○ 행정안전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6조)

-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 미디어콘텐츠과(신설)
- 미디어콘텐츠과를 신설하여 SNS미디어 정책 강화 및 현장소통과 연계된 홍보전략 추진함

○ 민생경제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7조)

- 민생경제과, 기업일자리과(변경), 세정과(이관), 납세지원과(이관), 징수과(이관)
- 기업지원과를 기업일자리과로 변경하고, 기업지원업무와 민생경제과의 일자리지원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게 함
- 예산재정실의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를 민생경제국으로 이관하여 민생경제와 연계성이 높은 세입업무를 별도 분리함

○ 돌봄복지국(변경)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8조)

- 통합돌봄과(변경), 복지지원과, 노인복지과(변경), 장애인복지과(신설)
- 복지정책국을 돌봄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시민복지국을 분리·신설하여 복지분야의 조직기능을 강화함
- 복지정책과를 통합돌봄과로 변경하고, 통합돌봄 업무 및 보훈단체 지원기능을 강화함
-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여 분야별 복지

  업무의 추진을 세분화함

○ 시민복지국(신설)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9조)

- 여성가족과(이관), 보육아동과(이관), 청년청소년과(이관), 위생과(이관)
- 복지정책국의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청년청소년과를 시민복지국으로 이관하여 복지업무를 세분화함
- 신설되는 시민복지국의 국 단위 적정 통솔범위 및 인력운영관리를 위하여 민생경제국 위생과를 이관함

○ 도시발전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2조)

-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폐지), 평화개발과(변경), 토지정보과, 도시부동산과(변경)
- 도시발전국의 균형개발과를 폐지하고 신도시개발업무는 도시계획과로 도시재생과 마을지원 업무는 부동산과로 이관하고, 부동산과는 도시부동산과로 변경함
- 평화경제과를 평화개발과로 변경하고 기업지원과의 산단관리·조성 업무를 도시발전국 산하 부서로 이관하여, 개발 업무 및 산단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함

○ 건축주택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3조)

- 건축디자인과, 허가총괄과(폐지), 허가1과, 허가2과, 허가3과(폐지), 주택과
- 허가총괄과와 허가3과를 폐지하고, 건축주택국내 업무를 재배분하여 과단위 업무량을 조정함

○ 환경국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14조)

- 환경정책과(변경), 기후에너지과(변경·이관),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기후위기대응과를 환경정책과로 변경하며, 환경정책 및 환경지도업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를 세분화함
- 중앙정부의 조직기구와 대응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국의 에너지

과를 환경국으로 이관하며, 기후위기대응과의 지속가능업무와 탄소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후에너지과로 이관함

○ 도시관리사업본부 : 부서재배치 및 분장사무 이관(안 제25조)

- 도시공원과(변경),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신설), 산림정원과
- 해당사무를 시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를 도시공원과로 변경함
- 도로분야 업무량 증가를 감안하여, 도로관리과를 도로시설과와 분리하여 도로관리분야와 도로시설물분야를 세분화하여 운영함

○ 운정권역 원격지 행정수요 충당을 위해 시청 직접 방문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운정민원출장소를 신설함 (안 제27조)

○ 파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함(1,898명 → 1,920명 / +22명) (안 제32조, 안 별표4)

○ 신설된 문산보건지소 및 운정민원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기함 (안 별표1)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조직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행정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8604 / Fax 031)940-4109

파주시 고시 제2026 - 40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파 주 시 장

하천명	점용자	점용자 주소	목적 · 개요	점용위치	면적 (㎡)	점용기간
동문천	파주시장 (안전총괄과)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선유3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7-320 외 2필지	30.0	'26.10.01.~ '26.10.30.
문산천	광탄면장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44	마을주민의 휴식 및 편의제공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418-3	50.0	'26.09.11.~ '30.12.31.
문산천	한국수자원공사 파주수도지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화석정로 45-28	노후상수관로 교체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53-2 외 8필지	(영구)36.91 (일시)1,237.99	'26.09.11.~ '30.12.31.
분수천	파주시장 (하수도과)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하수관로 정비사업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162-15 외 6필지	(영구)1.86 (일시)39.18	'26.09.21.~ '30.12.31.
눌노천	파주시장 (안전총괄과)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소규모공공시설 위험시설 정비사업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301 외 1필지	130	'26.09.21.~ '30.12.31.

파주시 고시 제2026 - 403호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08.

파 주 시 장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변경없음)

- 사 업 명 : 평화로드 문산
-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23 일원
- 유　　형 : 지역특화재생
- 면　　적 : 101,553㎡
- 사업기간 : 2026년 ~ 2029년 (4년간)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상도

변경 전



변경 후



3 사업총괄표

○ 변경 전

(단위 : 억원)

사업 유형	사업 번호	세부사업명	총 사업비	예산 출처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 계			410.4	132.3	88.2	103.5	35.6	32.3	18.5	-
마중물 사업	소계		235.5	132.3	88.2	-	-	15.0	-	-
	A-1	노을정거장 630 조성	96.7	58.0	38.7	-	-	-	-	-
	A-2	로컬문산 조성	13.6	8.2	5.4	-	-	-	-	-
	B-1	자전거-노을 테마 경관 조성	53.9	34.1	19.8	-	-	-	-	-
	B-2	자전거-노을 평화오름길 조성	17.5	10.5	7.0	-	-	-	-	-
	C-1	로컬상권 노을빛길 테마거리 조성	35.8	21.5	14.3	-	-	-	-	-
	C-2	청년·로컬 비즈니스 지원	3.6	-	-	-	-	3.6	-	-
	D-1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7.8	-	3.0	-	-	4.8	-	-
	D-2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6.6	-	-	-	-	6.6	-	-
부처 협업 사업	소계		157.5	-	-	103.5	35.6	-	18.4	-
	1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산통부)	37.5	-	-	7.5	11.6	-	18.4	-
	2	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행안부, 특수상황)	120.0	-	-	96.0	24.0	-	-	-
지자체 사업	소계		17.3	-	-	-	-	17.3	-	-
	1	문산자유시장_DMZ 지역관광 연계사업	12.2	-	-	-	-	12.2	-	-
	2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2.5	-	-	-	-	2.5	-	-
	3	문산거리축제/파주형 마을살리기	2.6	-	-	-	-	2.6	-	-
공기업	소계		0.1	-	-	-	-	-	0.1	-
	1	LH 수선유지급여사업	0.1	-	-	-	-	-	0.1	-

○ 변경 후

(단위 : 억원)

사업 유형	사업 번호	세부사업명	총 사업비	예산 출처						
				도시재생재정보조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합 계			410.4	132.3	88.2	103.5	35.6	32.3	18.5	-
마중물 사업	소계		235.5	132.3	88.2	-	-	15.0	-	-
	A-1	노을정거장 630 조성	101.0	60.3	40.2	-	-	0.5	-	-
	A-2	로컬문산 조성	9.8	5.9	3.9	-	-	-	-	-
	B-1	자전거-노을 테마 경관 조성	53.9	34.1	19.8	-	-	-	-	-
	B-2	자전거-노을 평화오름길 조성	17.5	10.5	7.0	-	-	-	-	-
	C-1	로컬상권 노을빛길 테마거리 조성	35.8	21.5	14.3	-	-	-	-	-
	C-2	청년·로컬 비즈니스 지원	3.6	-	-	-	-	3.6	-	-
	D-1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7.8	-	3.0	-	-	4.8	-	-
	D-2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6.1	-	-	-	-	6.1	-	-
부처 협업 사업	소계		157.5	-	-	103.5	35.6	-	18.4	-
	1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산통부)	37.5	-	-	7.5	11.6	-	18.4	-
	2	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행안부, 특수상황)	120.0	-	-	96.0	24.0	-	-	-
지자체 사업	소계		17.3	-	-	-	-	17.3	-	-
	1	문산자유시장_DMZ 지역관광 연계사업	12.2	-	-	-	-	12.2	-	-
	2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2.5	-	-	-	-	2.5	-	-
	3	문산거리축제/파주형 마을살리기	2.6	-	-	-	-	2.6	-	-
공기업	소계		0.1	-	-	-	-	-	0.1	-
	1	LH 수선유지급여사업	0.1	-	-	-	-	-	0.1	-

4 기타사항

○ 관련서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파주시청 균형개발과(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중앙빌딩 5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균형개발과(☎031-940-5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